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3호

**「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 
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」 고시개정(안)  
행정예고**

2013. 11. 28

중소기업청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2호

「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8일

중소기업청장

###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「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(‘13.9.11. 관계부처 합동)」의 후속대책으로 햇살론 보증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보증지원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햇살론 사업자 보증대출(지역신용보증재단)과 근로자 보증대출(신용보증재단 중앙회) 간 보증재원 배분에 있어 실제 공급비중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보증재원의 사업자 보증(재단)과 근로자 보증(중앙회) 간 보증공급목표를 “보증공급액 비율”에서 “30:70”으로 변경 (안 제2호 가목)
- 사업자 보증재원의 재단(원보증)과 중앙회(재보증) 간 보증공급목표를 “재보증 비율”에서 “20:80”으로 변경(안 제2호 나목)
- 햇살론 보증취급기관 간 보증재원 불균형 등으로 정상적 수행에 지장 초래 시 조정근거 마련(안 제2호 마목)
- 보증취급이 급격히 증가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임의출연 근거 마련 (안 제2호 바목)

## 3. 의견 제출

「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중소기업청, 참조 : 기업금융과, 전화 042-481-4454, 팩스 042-472-327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개정 고시(안)

발령 2013.00.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00호

## 1. 은행등(제 1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(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)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: 70 대 30

나.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

기본배분	재정상황	보증실적	지자체 출연실적	특수상황
25%	15%	35%	20%	5%

다.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 : ① + ② + ③ + ④

① 기본배분 : 재단 총 출연금 × 25% × 1/16

② 재정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 15% ×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율

③ 보증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 35% × (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/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)

④ 지자체 출연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 20% ×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

⑤ 특수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 5%

\* 특수상황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

[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]

재정자립도지수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영율	0.55/16	0.60/16	0.65/16	0.70/16	0.80/16	0.85/16	0.90/16	0.9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1.05/16	1.10/16	1.15/16	1.20/16	1.30/16	1.35/16	1.40/16	1.45/16

[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]

출연실적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영율	1.45/16	1.40/16	1.35/16	1.30/16	1.20/16	1.15/16	1.10/16	1.0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0.95/16	0.90/16	0.85/16	0.80/16	0.70/16	0.65/16	0.60/16	0.55/16

라. 단,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재단의 계약직 인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 이전에 우선 공제하여 각 재단에 배분하되, 인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범위에서 운용한다.

## 2 농업협동조합등(시민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상호저축은행·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·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신용

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.

- 가. 서민 보증부협약대출(이하 “햇살론”이라 한다)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재단에 100분의 30을 배분하고,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중앙회에 100분의 70을 배분한다.
- 나.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, 중앙회(재보증회계)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.
- 다. 나무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에 따른다.
- 라.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배분한다.
- 마. 단, 보증재원(재보증회계 포함)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.
- 바.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,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.

### 3.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, 초과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.

[금융회사별 출연 총액]

금융회사	농업 협동조합	수산업 협동조합	상호 저축은행	새마을 금고	신용 협동조합	산림조합
출연총액(억원)	3,859	334	2,000	2,362	1,362	83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